

第57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地域開發委員會會議錄

第3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11月13日(水) 午前11時
場 所 第2小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面

(11時05分 開議)

○委員長 李鍊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임시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현식 건설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996년 11월 1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道路占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城北區廳長 提出)

(11時06分)

○委員長 李鍊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정현식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局長 鄭顯植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지역개발위원회 이연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소관분야 관계법령 개정에 즈음한 보고말씀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

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기히 배포된 조례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에 즈음한 설명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李鍊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석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崔石根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李鍊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만 위원님.

○鄭昌萬委員 지금 현행법에 보면 전력구나 통신구, 어스양카 같은 것은 옛날 수준에 보면 정률제 즉 공시지가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정액제로 하다 보니까 수입 금액이 그러니까 점용료받는 물이 아주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점용료가 많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수입을 정률제로 했으면 수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입을 받지 못하고 정액제로 한 원인이 무엇이며 또한 작년에 우리 점용료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의 압력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이 조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垌 네, 나광수위원님.

○羅光洙委員 도로점용료라 하면 지하로 들어가는 전력구, 통신구 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신주, 전화주, 전주 밖에 서 있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따라서 일반 시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구두담기 가판점이랄지 여러가지 보면 보도블럭 위에 가판대들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鍊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建設局長 鄭顯植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관리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먼저 정창만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구나 통신구, 어스양카가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바뀐 건, 정액제로 하면 거기 산정방식이 정률제라면 이렇게 됩니다. 점용면적, 즉 말해서 평방미터당 하고 또 1년간 단위로 해서 토지가격의 0.05를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구와 성북구가 차이가 나고 같은 성북구 내에서도 동선동과 석관동과 지가 차이가 나니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정액제로 바꾸었습니다. 정액제로 바꾸다 보면은 금액은 많이 줄어지는데 저희 성북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이 이 어스양카를 하는 것이 지하를 파면은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도로가 있을때 어스양카라는 것이 우리 전문위원이 마지막 검토자료에 넣었는데 도로에다가 뭍니까, 집을 지을때 도로 옆에 지하를 팔때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를 박는 것이거든요. 그 옆에 도로 없을때는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도로가 있을때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 성북은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또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20미터 이상 도로는 시 수입이 되고 또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또 어스양카를

많이 사용한 도로는 거의 20미터 이상 되는 도로 시에 관련되고 또 거기서 조정교부금을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크게 감소하는 것은 저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한전에 압력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여기서, 뭍니까 온지도 국장님이 얼마 안되었고 저도 얼마 안되어서 그것은 명확히 말씀 못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鄭昌萬委員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또 이렇게 정액제로 바꾼다면은 어찌다 보면은 어떤때 보면은 만일 명동이나 시내 들어가면은 거기는 공시지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렇죠.

○鄭昌萬委員 성북구는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전체적인 면으로 봤을때 수입이 우리가 교부금 30%까지는 받지 않습니까? 20미터이상은?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네.

○鄭昌萬委員 그런데 수입자체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겁니다. 많은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게 되면은 이것을 인한 한전이 지하로 물음으로써 엄청난 돈을 지원해 줍니다. 한전 수입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은 이런데서 돈을 뜯어다가 성북구 자립도를 올린다는지 어느 구에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올해 또 이것이 개정되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력구, 통신구 이런 것은 전기계통, 전화선하고. 이런 계통에 어떤 압력 받아 가지고 또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구수입이라도 제대로 받아 가지고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조례만 개정을 해 가지고 구 수입이라든지 시수입의 30%도 제대로 액수가 많음으로써 수입도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30%니까요.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렇죠.

○鄭昌萬委員 그러면은 그렇게 액수대로 자립도를 올릴 수 있는데 자꾸 조례를 개정을 한다면은 수입이 적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때는 지금 전력구나

통신구가 주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앞으로 이것이 지하로 들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단한 수입을 과연 우리를 포기해야 할 것이냐, 개정을 해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놔두고 수입을 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한전이나 우리 통신 기구에서 어느 참 성북구청에다가 압력을 넣었다든지 시에 압력을 넣었다든지 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해서 자기들이 지출하는 부분을 좀 적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얼마안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하고 또 지금 와서 개정하고 이것 밤낮 개정하다가 붙일 다 합니까? 어느 편익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은 안된다 이겁니다.

○建設局長 鄭顯植 정위원장님 말씀에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부에서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에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서울시 조례가 거기에 맞게 개정되었고 이어서 각 자치구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에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자치구 의지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입장이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과 관련해서 수입이 감소되는 것은 산술적으로 추정하면은 작년의 경우를 봐서 한 6,000만원 정도, 이렇게.

○鄭昌萬委員 우리구만 그렇습니까?

○建設局長 鄭顯植 우리 성북구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鄭昌萬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이 수입을 우리가 정율제로 했을때 그러니까 공시지가죠. 정율제 했을때 하고 정액제로 했을때 성북구내의 수입이 차액이 6,000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뜻은.

○建設局長 鄭顯植 네. 그렇습니다. 6,000~7,000만원.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런데 거기서 교부

금을 저희가 30%를 계산하니까 6,000만원의 30%니까 2,000만원 정도죠.

○鄭昌萬委員 어차피 20미터 이상은 30%를 공시지가 정율제로 해도 받는 것이요, 정액제로 해도 받는 것인데 지금 적자 나면서 그러니까 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2,000만원 돈을. 그러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느냐. 왜 적자 나면서, 또 자립도도 제일 약한데. 성북구가.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런데 성북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10월 5일날 시, 도로 점용 징수조례 개정을 해서 각 구도 시에 맞춰서 하도록 와서 상정을 한 것입니다.

○鄭昌萬委員 좀 우리 구에 맞지 않는 것은 항의라도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만은 정율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나요?

○委員長 李鍊炯 유홍선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柳興先委員 유홍선위원입니다. 거년에 우리 시민이 주차장 진입로를 즉 말하면은 사용할 때는 그때 올려주고 한전이나 통신계통은 내려주었다 이말입니다. 거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예요. 문안만 바꾸어졌지,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거년이나. 그러면은 거년에도 한전이나 통신, 이런데는 내려주고 올해 또 이것을 하면은 더 내려 주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런 즉 말하면은 한전이나, 통신계통은 특혜를 줘야 되는가, 이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즉 말하면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성북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말하면은 구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인데 거년에 우리 시민이나 일반 주민이 쓰는 올라갔다 이말입니다. 올해 내려줬고, 관공서 업체는. 내려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말하면은 건설부나 시에서는 자꾸 떨어춰 주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는 지금 6,000만원 마이너스 되는데 더 마이너스 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金鈴基委員 전액이 6,000입니까? 6,000만원

에서 우리가 30%,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6,000만원중에서 저희가 30%를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데는 어스양카가 매년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지금 들어왔던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론 이 이후에는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보니까 1년간 6,000만원 정도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30%니까 $6 \times 3 = 18$ 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를 일단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金鈴基委員 6,000만원이 아니고 2,000만원이죠?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네. 2,000만원이죠. 우리 구 수입차원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柳興先委員 구 수입에도 지방자치제가 지금 실현되어 가지고 걸음마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자꾸 이런식으로 한전이나 통신 이런데는 계속적으로 단일계획비, 관청보다 돈이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잘 쓰고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다가 계속 특혜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말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는 계속 허리띠 졸라매게 올려 주면서, 올려서 징수를 하면서 왜 그런 업체는 떨어춰줘야 되는가, 여기서 보는 본위원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말입니다.

○建設局長 鄭顯植 지금 유홍선위원님 말씀, 김영기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정창만위원님 한결같이 우리 재정여건이 아주 열악한 성북구에 수입감소되는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운 말씀, 우리 구 재정 금융을 위해서 많이 염려하시고 성원하시는 그 충정에 대해서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행정에 하나의 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준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할 수 없이 조례를 고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우리 구도 그렇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그 충정이 저희 집행부에서 하나 하나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 가슴속에 새기도록 노력

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건은 다만 그러한 현실적 제약이 있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다음에 나광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화, 전주나, 전화주 지상이나 지하를 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우리 도로상에 있는 구두박스나 가판점도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羅光洙委員 그러면은 그 징수가 소액 점용료 범위를 현행 500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은, 그러면은 가판점등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도 그렇게 10배씩 올려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것이 500원에서 5,000원으로 10배 올린다는 뜻이 아니고 저희가 세금의 최저 단위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는 지금 2,000원 미만으로 안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500원 단위중에서 5,000원 미만은 안받는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가판점은 20만원에서 30만원씩 하기 때문에 돈을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최소액이 500원 미만은 안받았는데 앞으로 개정후로는

○羅光洙委員 5,000원 미만까지 안받는 것으로요.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500원 미만, 5,000원 미만이 없습니다.

○鄭昌萬委員 여태까지 한건도 없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없어요. 예년에는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공시지가 비싸서 5,000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구만 이렇게 했지만 현실에 맞게 제가 보면은 1만원 미만짜리를 제가 온지 4개월 되었습니다. 1만원 미만짜리를 제가 싸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羅光洙委員 알겠습니다.

○金順權委員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성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은 사실 한전같은 경우는 폐돈을 벌고 있

거든요. 제가 그쪽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한전하고 통신계통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이 입김의 영향력이 지방자치단체보다 강해 가지고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관들한테 도로점용료는 100% 회수가 됩니까? 매년?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네.

○金順權委員 매년 회수가 됩니까? 100% 회수되죠?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네.

○金順權委員 동시에 저희가 하는 것에 우리가 이번에 정율제를 정액제로 바꾸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 주었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전신주나 전화주 같은 경우 이설 문제가 쉽게 되도록 좀 조건을 달면서 그쪽하고 업무를 유기적으로 풀어나가는 것도 참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들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 두번째 여기와 벗어나지만은 예를 들어서 노점상 자체도 도로를 점용하거든요. 20미터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조그만 도로 같은데 보면은, 그런데 노점상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보면은 영세형도 있지만은 기업형도 많더라구요. 기업형 자체에서는 지금 법상에는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수를 확보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권유를 해 봤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인들이 가게를 가지고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는 노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황금알을 낳은 노점상이거든요. 노점상이 지금 황금상이예요. 황금상,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관리들이 상당히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 서울시 성북구 관내 노점상에 대해서만 관리하기 위해서 등록을 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등록은 했지만은 아직 세금은 메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 방법들에 대해서 중앙 정부 차원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일정한 세금을 걷든지, 아니면은 노점상 정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정책들을 입현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먼저 전화주와 통신주와 함께 전신주 이설문제는 물론 토목과에서 지난주 예산할 때도 얘기가 다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은 돈을 받지 않고 해 주는데 다시 갈 수 있는 이전 장소를 구해 달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도 동장 해 볼때 해 보니까 분명히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이전할 장소를 못해서 못 옮긴 적이 몇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전 장소만 되면은 우리 수요가의 부담없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동네에서 그런일이 있으시면은 이전 장소가 확보가 되면은 속히 해드리도록 말씀드리고요. 또 노점상이 도로점용을 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점상이 성북구에 한 200여개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절대 금지구역, 유도구역, 잠정허용구역, 이런식으로 저희 행정편의상 나누어서 224개가 전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재래시장에 있는 입구에 있는 노점상에서 점용료를 받으려고 작년에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회의를 해 보고 동네 여론을 들어보니까 물론 기업형도 없지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업형 정도는 우리 성북구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종로나 중구 그런데는 맞는 것 같고 성북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금년 6월경에 제가 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그것을 유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송파에서 노점상에 대해서 도로사용료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파에서 2억5,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작년일 것입니다. 실제 4,000만원이 걷혔습니다. 징수는. 그러면서 노점상의 다수 집단 민원이 엄청나게 와 가지고 송파도 실패한 것으로 해서 대상을 안줬다, 잠정 송파도 철회는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도 송파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금년 6월에 그렇게 전임 과장한테, 과장이 그 당시에는 공식이었죠. 전임 계장한테, 가로정비 계장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등장할 때 이 관계로서 동장회의도 소집을 하고 회의도 여러번 한 것을 봤거든요. 조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딱 오니까 그것이 생각이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했더니 이미 정계장이 6월달에 그런 송파의 문제점을 성북도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을 예상을 해서 유보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金順權委員 제가 봤을 경우에도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학생운동하고 민중운동도 해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애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동네에 보면 한 두군데 노점상들이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려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있는 노점상들 그런데 있는 노점상들은 저도 그 지역에 장사를 해 보지만 상가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보다는 수익이 몇배는 더 오른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권리금도 훨씬 더 높다고요. 그리고 거기는 보이지 않는 검은 라인들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일종의 블로커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아주 배타적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쫓아 내버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쫓아 내버리고 아주 배타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고 단결적 힘이 있기 때문에 집단 저항을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 대한 어떤 집행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정성, 형평성에 봤을 때는 언젠가는 좀 더 방향을 잡아넘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동네에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목포를 가 보면 목포의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의 자격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나 하면 국가 유공자라든지 또는 1급이상 상해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상업지역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점을 놓고 봤을 때 도로점용료 문제들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우리들의 검토가 있어

야 된다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아래 신세계 백화점이 있죠. 그쪽에 보면 강북구에서는 단속이 심하다고 그러니까. 강북구는 단속이 심한데 우리 성북구는 단속을 안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강북구의원들이 저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우리를 거리질서 미화차원에서 단속을 하는데 성북구가 안하다 보니까 강북구의원들하고 강북구청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점상들한테. 그래서 제가 느낀점들은 그런 경제지역 같은 단속의 문제에 있어서는 인근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동시에 해야지 우리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 한다든지 다른 구는 하고 우리가 안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민원의 소지를 만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鍊垈 다음 질의하실 분 제십니까? 네, 이승로위원님.

○李承魯委員 지금 점용료 문제는 각 동마다 돌출간판 문제로 민원이 상당히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지하에 매설된 통신관, 한전, 배선관 이것은 모두 징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 매설관이 전부 다 파악이 됐는지 됐으면 언제쯤 그게 파악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 보세요.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돌출간판 관계는 업무가 지금 현재 시민입장에서 보시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돌출간판 허가는 도시정비과 광고물 관리계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주상에 나와 있는 입간판도 거기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돌출간판 허가도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허가 나온 당해 년도 점용료는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서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그 자료를 저희가 직접 동에서 조사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정비과 광고물관리계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과는 저희가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와서 저희도 그 민원 처리할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물관리계에서 요청을 해서 감독을 해 주고 있고 왜 그런 민원이 조금 나올 수 있냐면 간판이란 게 이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다 보면 높은 데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면적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가로 세로 × 양면을 기준해서 가격을 냅니다. 내다 보니까 면적 크기라든가 또 조사하는 시점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예를 들어서 상호만 보고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실제적으로 상호가 그대로 있으니깐 바뀔니다. 그래서 나가면 주인들이 나는 영업한지 한 달 밖에 안 된다 뭐 10일밖에 안 된다.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도 광고물관리계에다 여러번 구두로 저도 얘기를 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완전히 없어진다고는 제가 솔직히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저희 자체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전 지하에 있는 파악은 언제 됐느냐 이 말씀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는 자료가 없고 저도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왔습니다. 파악은 되어 있는데 그게 언제 파악이 되어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그것은 우리 이승로위원님께 서면으로 해서 하고 또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承魯委員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언제 그것이 다 파악이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전부 다 정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한전이나 또는 도시가스 또는 통신공사 이런 데서 자료를 처음을 공사하면 먼저 자료부터 받잖아요. 과거에 매설된 부분 자료를 받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작년에 저희가 장위동 하수완급공사를 할려고 보니까 거기가 22,000볼트인가 고압선이 흐르는데도 그것을 구에서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과거에는 계속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 자료를 전부 챙겨서 저한테 한번 주세요.

○委員長 李鍊炯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丘在永委員 이승로위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류관도 우리 구에 경유하는 게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송류관은 없는데요.

○丘在永委員 그래서 우리 구의 통과하고 있는 관이 몇 m나 되는지 이것 알 수 있습니까?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사무실에 가면 알 수 있습니다.

○丘在永委員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같이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課長 柳慶相 지금 현재 저희가 굴착허가를 나갈 때, 예를 들어서 가스관 허가가 나가면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나갑니다. 그러면 토목과에서 지금은 자료가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금년에 도시가스에서 얼마를 받고 예를 들어서 직경과 길이를 알고 한전에서 얼마는 굴착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승로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10년전까지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금년에 자료 갖고 있다고 하니까 다 파악해서 갖고 있다고 하니까 구재영위원님과 이승로간사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鍊炯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11時45分 停會)

(11時49分 續開)

○委員長 李鍊炯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토론 및 의결은 내일 제4차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5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지역개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50分 散會)

○出席委員 13人

李 鍊 垌	李 承 魯	金 東 殷
羅 光 洙	鄭 昌 萬	金 甲 濟
文 京 周	金 順 權	柳 興 先
丘 在 永	金 鈴 基	徐 榮 振
辛 在 福		

○缺席委員 2人

趙 基 燦 許 東 翼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參席公務員

建 設 局 長	鄭 顯 植
建 設 管 理 課 長	柳 慶 相

96

제출년월일 : 1996년 11월 1일

제 출 자 : 성 북 구 청 장